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2호 2023. 1. 6(금)

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3-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통택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----- 1
- 남원시 고시 제2023-2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171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----- 2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3-1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통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통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1월 6일

남 원 시 장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①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2	도통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일원	99,579	남원시고시 2013-5호 (2013.01.25)	도통1택지개발사업(1985~1987) 건설부고시제607호(1987.12.1)
기정	3	도통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남원시 도통동 495-1번지 일원	118,880	남원시고시 2013-5호 (2013.01.25)	도통1택지개발사업(1985~1987) 건설부고시제607호(1987.12.1)

②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		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		99,579	100.0	
도통1지구	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80,076	80.4	
	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9,503	19.6	
합 계			118,880	100.0	
도통2지구	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3,280	28.0	
	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85,600	72.0	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1) 경관지구(구 미관지구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결정일	비고
도통1지구		2개소			31,011 (8,177)	2,566 (693)			
기정	3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1-2호선변 (시청로)	16,911 (4,269)	1,391 (369)	12	전라북도고시 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6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1-6호선변 (IC진입로)	14,100 (3,908)	1,175 (324)	12	전라북도고시 제1997-168호 (1997.5.13)	
도통2지구		2개소			28,200 (7,077)	2,350 (593)			
기정	4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1-1호선변 (도통대로)	14,100 (3,601)	1,175 (304)	12	전라북도고시 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6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대로1-6호선변 (IC진입로)	14,100 (3,476)	1,175 (289)	12	전라북도고시 제1997-168호 (1997.5.13)	

※ 면적 및 연장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.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<법률 제14795호, 2017.4.18.>제2조에 따라 기 지정된 미관 지구에 대하여 경관지구로 변경

2) 고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고도제한 내용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고
도통1지구		4개소				376,846 (93,275)		
기정	15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남원시청 일원	5층이하	116,770 (72,778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31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용성고 일원	8층이하	237,912 (4,430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39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도통동 509-1번지 일원	10층이하	9,231 (9,075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40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도통동 535-9번지 일원	10층이하	12,933 (6,992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도통2지구		2개소				267,412 (48,317)		
기정	27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도통동 495-1번지 일원	8층이하	29,500 (26,511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기정	31	고도 지구	최고 고도지구	용성고 일원	8층이하	237,912 (21,806)	전라북도고시제1997-168호 (1997.5.13)	

※ 면적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.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 로 (변경없음)

(1) 도로 총괄표

구역명	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
도통 1지구	합계	31	6,724 (3,450)	136,208 (27,122)	5	3,441 (874)	108,310 (7,200)	4	930 (472)	12,214 (5,260)	22	2,353 (2,104)	15,684 (14,436)
	대로	2	2,956 (389)	103,460 (3,399)	2	2,956 (389)	103,460 (3,399)	-	-	-	-	-	-
	중로	2	943 (516)	13,362 (6,601)	-	-	-	1	682 (255)	10,230 (3,486)	1	261	3,132 (3,115)
	소로	27	2,825 (2,545)	19,386 (16,896)	3	485	4,850 (3,801)	3	248 (217)	1,984 (1,774)	21	2,092 (1,843)	12,552 (11,321)
도통 2지구	합계	17	9,192 (2,653)	270,024 (41,969)	4	6,189 (1,227)	212,289 (27,971)	1	108	865	12	2,895 (1,318)	56,870 (13,133)
	대로	3	7,778 (1,239)	258,528 (30,746)	2	5,951 (989)	208,285 (24,240)	-	-	-	1	1,827 (250)	50,243 (6,506)
	중로	1	160	3,200 (2,927)	1	160	3,200 (2,927)	-	-	-	-	-	-
	소로	13	1,254	8,296	1	78	804	1	108	865	11	1,068	6,627

※ 면적 및 연장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.

(가) 도로(도통1지구)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2	35	주간선 도로	938 (54)	대1-3 도통동 439-3도	대3-5 향교동 92답	일반 도로	시청	건설부고시 제520호 (1963.8.26)	
기정	대로	1	6	35	주간선 도로	2,018 (338)	2호광장 향교동 179-1도	5호광장 월락동 303도	일반 도로	지리산 주유소	건설부고시 제449호 (1981.12.12)	
기정	중로	2	8	15	집산 도로	682 (241)	대로1-2 도통동 546도	대로1-1 도통동 185-1도	일반 도로	시청 남측경계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중로	3	6	12	집산 도로	261	대로1-2 도통동 552도	소로2-49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 북측경계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1	7	10	집산 도로	99	대로1-6 향교동 545답	중로3-6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8	10	집산 도로	126	중로3-6 도통동 546도	중로2-8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 북측경계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1	9	10	집산 도로	260	중로1-14 도통동 408-2도	중로2-8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2	46	8	국지 도로	134	대로1-2 도통동 552도	소로1-9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324호 (1977.12.30)	
기정	소로	2	72	8	국지 도로	39	대로1-6 도통동 544도	용성고 구역계 도통동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건설부고시 제531호 (1985.12.3)	
기정	소로	2	73	8	국지 도로	75 (44)	소로1-9 도통동 548도	소로1-12 도통동 139-2도	일반 도로	시청 동남측	건설부고시 제531호 (1985.12.3)	
기정	소로	3	77	6	국지 도로	109 (21)	중로2-8 도통동 548도	소로2-49 도통동 255-2답	일반 도로	남원시청 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52호 (1986.12.31)	
기정	소로	3	106	6	국지 도로	21	대로1-6 도통동 544도	소로3-108 도통동 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07	6	국지 도로	94	소로3-108 도통동 545도	소로3-110 도통동 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08	6	국지 도로	179	소로2-72 도통동 545도	소로3-110 도통동 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09	6	국지 도로	43	중로3-6 도통동 546도	소로3-110 도통동 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0	6	국지 도로	89	소로1-7 도통동 545도	소로3-107 도통동 508-6대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1	6	국지 도로	120	중로3-6 도통동 546도	소로1-7 도통동 545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2	6	국지 도로	79	소로1-8 도통동 546도	소로3-113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3	6	국지 도로	143	중로3-6 도통동 546	소로1-8 도통동 546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4	6	국지 도로	105	소로1-8 도통동 546도	소로3-77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5	6	국지 도로	80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18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
※ 연장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연장임.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16	6	국지 도로	68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18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7	6	국지 도로	56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18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8	6	국지 도로	154	중로2-8 도통동 548도	소로2-73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19	6	국지 도로	91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23 도통동 547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20	6	국지 도로	91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23 도통동 547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21	6	국지 도로	91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23 도통동 547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22	6	국지 도로	91	소로1-9 도통동 547도	소로3-123 도통동 547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23	6	국지 도로	153	중로2-8 도통동 546도	소로2-46 도통동 548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정	소로	3	124	6	국지 도로	39	대로1-2 도통동 552도	소로3-123 도통동 547도	일반 도로	시청동측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기 정	소로	3	138	6	국지 도로	196 (35)	소로3-107 도통동 545도	소로2-48 도통동 355-22도	일반 도로	용성고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59호 (1991.11.23)	
기정	대로	1	1	35	주간선 도로	3,933 (207)	용정동구역계 용정동 760도	신촌동구역계 신촌동 389천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서측	건설부고시 제520호 (1963.8.26)	
기정	대로	1	6	35	주간선 도로	2,018 (782)	2호광장 향교동 179-1도	5호광장 월락동 303도	일반 도로	지리산 주유소	건설부고시 제449호 (1981.12.12)	
기정	대로	3	13	26~2 9.5	주간선 도로	1,827 (250)	대1-6 향교동 산3-6	용정동구역계 용정동 760도	일반 도로	남원 배수지	전라북도고시 제-200호 (2010.8.13)	
기정	중로	1	3	20	보조 간선 도로	160	대로1-1 도통동 541도	도통동 495-4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남측경계	남원시고시 제2001-30호 (2001.5.15)	
기정	소로	1	44	10	국지 도로	78	중로1-3 도통동 541도	소로2-74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동측	남원시고시 제2013-5호 (2013.1.25)	
기정	소로	2	74	8	국지 도로	108	대로1-1 도통동 541도	택지개발지구계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서측경계	건설부고시 제531호 (1985.12.3)	

※ 연장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연장임.

(나) 도로(도통2지구)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25	6	국지 도로	241	대로1-6 도통동 542도	소로3-134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26	6	국지 도로	198	소로3-125 도통동 543도	소로3-129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27	6	국지 도로	33	대로1-6 도통동 542도	소로3-126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28	6	국지 도로	31	소로3-126 도통동 543도	소로3-125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29	6	국지 도로	23	대로1-6 도통동 542도	소로3-134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30	6	국지 도로	50	대로1-1 도통동 541도	소로3-134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31	6	국지 도로	102	대로1-6 도통동 542도	소로2-74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32	6	국지 도로	61	소로3-133 도통동 540도	소로3-131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33	6	국지 도로	101	대로1-6 도통동 542도	소로2-74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도통동 495-1번지 서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134	6	국지 도로	124	대로1-1 도통동 541도	소로3-129 도통동 543도	일반 도로	용성중 북측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기정	소로	3	206	6	국지 도로	103	중로1-3 도통동 541도	소로2-74 도통동 540도	일반 도로	경관녹지 서측	남원시고시 제2013-5호 (2013.1.25)	

※ 연장에서의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연장임.

나) 자동차정류장 (폐지)

구역명	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도통 2지구	폐지	1	자동차 정류장	여객자동차 터미널 (고속버스)	도통동 495-1번지	3,511	감)3,511	-	건설부고시 제539호 (1985.12.12)	

▣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자동차정류장	○ 자동차정류장 폐지 ○ 위치 : 도통동 495-1 ○ 면적 : 3,511m ²	○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인해 시외버스터미널로 합병·운영함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폐지

2) 공간시설 (변경없음)

가)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역명	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도통1지구	기정	1	도통1호 공원(1호)	어린이공원	도통동 510-4번지	1,577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	기정	2	도통2호 공원(2호)	어린이공원	도통동 521번지	1,595	전라북도고시 제235호 (1985.12.29)	
도통2지구	기정	3	도통3호 공원(3호)	어린이공원	도통동 502번지	2,605	전라북도고시 제241호 (1985.12.28)	

나) 녹지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역명	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도통2지구	기정	1	녹 지	경관녹지	도통동 495-3번지	3,432	남원시고시제2013-5호 (2013.1.25.)	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없음)

가)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
구역명	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도통1지구	기정	6	공공청사	공공업무시설 (남원시청)	도통동 518번지	16,689	남원시고시제2013-5호 (2013.1.25.)	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주거용지

가) 도통1지구 주거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1	R1	2,102.7	1	도통동 530-12 일원	173.6	
			2	도통동 530-11 일원	181.1	
			3	도통동 530-10 일원	179.3	
			4	도통동 530-9 일원	174.4	
			5	도통동 530-8 일원	168.5	
			6	도통동 530-7 일원	174.8	
			7	도통동 530-2 일원	354.2	
			8	도통동 530-3 일원	179.2	
			9	도통동 530-4 일원	174.4	
			10	도통동 530-5 일원	168.8	
			11	도통동 530-6 일원	174.4	
	R2	2,110.8	1	도통동 531-12 일원	171.9	
			2	도통동 531-11 일원	177.8	
			3	도통동 531-10 일원	177.8	
			4	도통동 531-9 일원	177.7	
			5	도통동 531-8 일원	177.6	
			6	도통동 531-7 일원	172.3	
			7	도통동 531-1 일원	172.7	
			8	도통동 531-2 일원	177.6	
			9	도통동 531-3 일원	177.7	
			10	도통동 531-4 일원	177.6	
			11	도통동 531-5 일원	177.6	
			12	도통동 531-6 일원	172.5	
	R3	2,286.4	1	도통동 532-12 일원	186.2	
			2	도통동 532-11 일원	192.7	
			3	도통동 532-10 일원	192.7	
			4	도통동 532-9 일원	192.7	
			5	도통동 532-8 일원	192.6	
			6	도통동 532-7 일원	188.2	
			7	도통동 532-1 일원	188.5	
			8	도통동 532-2 일원	191.3	
			9	도통동 532-3 일원	191.4	
			10	도통동 532-4 일원	191.6	
			11	도통동 532-5 일원	191.5	
			12	도통동 532-6 일원	187.0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1	R4	2,287.3	1	도통동 533-12 일원	188.7	
			2	도통동 533-11 일원	191.9	
			3	도통동 533-10 일원	191.9	
			4	도통동 533-9 일원	191.9	
			5	도통동 533-8 일원	191.9	
			6	도통동 533-7 일원	188.0	
			7	도통동 533-1 일원	188.6	
			8	도통동 533-2 일원	191.7	
			9	도통동 533-3 일원	191.7	
			10	도통동 533-4 일원	191.7	
			11	도통동 533-5 일원	191.6	
			12	도통동 533-6 일원	187.7	
	R5	2,289.6	1	도통동 534-12 일원	189.7	
			2	도통동 534-11 일원	195.6	
			3	도통동 534-10 일원	195.2	
			4	도통동 534-9 일원	194.8	
			5	도통동 534-8 일원	194.5	
			6	도통동 534-7 일원	187.2	
			7	도통동 534-1 일원	184.1	
			8	도통동 534-2 일원	190.0	
			9	도통동 534-3 일원	190.4	
			10	도통동 534-4 일원	191.0	
			11	도통동 534-5 일원	191.5	
			12	도통동 534-6 일원	185.6	
	R6	2,309.0	1	도통동 522-9 일원	191.0	
			2	도통동 522-10 일원	189.5	
			3	도통동 522-11 일원	191.9	
			4	도통동 522-1 일원	189.7	
			5	도통동 522-8 일원	299.6	
			6	도통동 522-2 일원	301.9	
			7	도통동 522-3 일원	190.8	
			8	도통동 522-7 일원	198.5	
			9	도통동 522-6 일원	176.7	
			10	도통동 522-5 일원	189.8	
			11	도통동 522-4 일원	189.6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1	R7	1,874.6	1	도통동 520-9 일원	192.0	
			2	도통동 520-8 일원	198.8	
			3	도통동 520-7 일원	198.8	
			4	도통동 520-6 일원	198.9	
			5	도통동 520-1 일원	192.5	
			6	도통동 520-2 일원	198.9	
			7	도통동 520-3 일원	198.9	
			8	도통동 520-4 일원	199.0	
			9	도통동 520-5 일원	296.8	
	R8	2,151.9	1	도통동 519-10 일원	201.8	
			2	도통동 519-9 일원	207.8	
			3	도통동 519-8 일원	207.7	
			4	도통동 519-7 일원	207.7	
			5	도통동 519-6 일원	225.0	
			6	도통동 519-1 일원	200.6	
			7	도통동 519-2 일원	208.0	
			8	도통동 519-3 일원	208.0	
			9	도통동 519-4 일원	207.8	
			10	도통동 519-5 일원	277.5	
	R9	2,650.9	1	도통동 517-12 일원	211.1	
			2	도통동 517-11 일원	219.5	
			3	도통동 517-14 일원	105.9	
			4	도통동 517-10 일원	113.7	
			5	도통동 517-9 일원	219.7	
			6	도통동 517-8 일원	219.6	
			7	도통동 517-7 일원	233.3	
			8	도통동 517-1 일원	213.4	
			9	도통동 517-2 일원	219.5	
			10	도통동 517-3 일원	219.5	
			11	도통동 517-4 일원	219.6	
			12	도통동 517-5 일원	219.7	
			13	도통동 517-6 일원	236.4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2	R10	2,124.6	1	도통동 516-10 일원	199.9	
			2	도통동 516-9 일원	207.0	
			3	도통동 516-8 일원	207.4	
			4	도통동 516-7 일원	207.9	
			5	도통동 516-6 일원	295.5	
			6	도통동 516-1 일원	203.6	
			7	도통동 516-2 일원	209.5	
			8	도통동 516-3 일원	208.9	
			9	도통동 516-4 일원	208.3	
			10	도통동 516-5 일원	176.6	
	R11	2,035.6	1	도통동 515-10 일원	198.3	
			2	도통동 515-9 일원	211.6	
			3	도통동 515-8 일원	211.7	
			4	도통동 515-7 일원	214.1	
			5	도통동 515-6 일원	182.9	
			6	도통동 515-1 일원	200.2	
			7	도통동 515-2 일원	208.8	
			8	도통동 515-3 일원	208.6	
			9	도통동 515-4 일원	209.2	
			10	도통동 515-5 일원	190.2	
	R12	2,113.4	1	도통동 514-10 일원	204.6	
			2	도통동 514-9 일원	210.3	
			3	도통동 514-8 일원	210.5	
			4	도통동 514-7 일원	210.2	
			5	도통동 514-6 일원	219.6	
			6	도통동 514-1 일원	207.3	
			7	도통동 514-2 일원	212.5	
			8	도통동 514-3 일원	212.9	
			9	도통동 514-4 일원	213.0	
			10	도통동 514-5 일원	212.5	
	R13	843.7	1	도통동 513-3 일원	278.9	
			2	도통동 513-2 일원	220.8	
			3	도통동 513-1 일원	344.0	
	R14	1,391.3	1	도통동 511-5 일원	229.5	
			2	도통동 511-6 일원	236.1	
			3	도통동 511-1 일원	230.0	
			4	도통동 511-4 일원	229.7	
			5	도통동 511-3 일원	236.0	
			6	도통동 511-2 일원	230.0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3	R15	1,783.4	1	도통동 512-5 일원	171.0	
			2	도통동 512-6 일원	178.3	
			3	도통동 512-7 일원	178.4	
			4	도통동 512-8 일원	249.1	
			5	도통동 512-4 일원	226.1	
			6	도통동 512-3 일원	345.4	
			7	도통동 512-1 일원	220.1	
			8	도통동 512-2 일원	215.0	
	R16	3,211.6	1	도통동 508-10 일원	200.8	
			2	도통동 508-9 일원	206.7	
			3	도통동 508-8 일원	206.9	
			4	도통동 508-7 일원	246.0	
			5	도통동 508-6 일원	216.7	
			6	도통동 508-11 일원	200.6	
			7	도통동 508-12 일원	206.6	
			8	도통동 508-13 일원	219.6	
			9	도통동 508-14 일원	225.7	
			10	도통동 508-5 일원	286.7	
			11	도통동 508-4 일원	252.2	
			12	도통동 508-3 일원	250.3	
			13	도통동 508-2 일원	249.7	
			14	도통동 508-1 일원	243.1	
	R17	2,866.0	1	도통동 507-7 일원	238.2	
			2	도통동 507-8 일원	234.5	
			3	도통동 507-9 일원	235.6	
			4	도통동 507-10 일원	234.4	
			5	도통동 507-11 일원	206.4	
			6	도통동 507-1 일원	216.7	
			7	도통동 507-6 일원	235.2	
			8	도통동 507-5 일원	259.5	
			9	도통동 507-4 일원	283.2	
			10	도통동 507-3 일원	221.7	
			11	도통동 507-2 일원	229.1	
			12	도통동 506-8 일원	271.5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3	R18	1,541.1	1	도통동 505-5 일원	276.2	
			2	도통동 505-7 일원	141.0	
			3	도통동 505-4 일원	282.0	
			4	도통동 505-6 일원	282.4	
			5	도통동 505-2 일원	282.7	
			6	도통동 505-1 일원	276.8	
	R19	1,531.9	1	도통동 506-5 일원	209.8	
			2	도통동 506-6 일원	249.9	
			3	도통동 506-4 일원	351.1	
			4	도통동 506-3 일원	284.5	
			5	도통동 506-2 일원	254.4	
			6	도통동 506-1 일원	182.2	
	R20	730.7	1	도통동 504-1 일원	261.9	
			2	도통동 504-2 일원	222.3	
			3	도통동 504-3 일원	246.5	
합	계	40,236.5				

나) 도통2지구 주거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주거4	R21	1,303.2	1	도통동 503-1 일원	325.5	
			2	도통동 503-2 일원	278.3	
			3	도통동 503-3 일원	351.4	
			4	도통동 503-4 일원	348.0	
	R22	3,456.8	1	도통동 501-1 일원	248.7	
			2	도통동 501-2 일원	257.5	
			3	도통동 501-3 일원	265.0	
			4	도통동 501-4 일원	267.2	
			5	도통동 501-5 일원	263.8	
			6	도통동 501-6 일원	255.9	
			7	도통동 501-7 일원	242.2	
			8	도통동 501-14 일원	236.3	
			9	도통동 501-13 일원	241.4	
			10	도통동 501-12 일원	239.9	
			11	도통동 501-11 일원	238.4	
			12	도통동 501-10 일원	236.9	
			13	도통동 501-9 일원	235.5	
			14	도통동 501-8 일원	228.1	
	R23	2,733.9	1	도통동 500-1 일원	190.7	
			2	도통동 500-2 일원	186.0	
			3	도통동 500-3 일원	187.1	
			4	도통동 500-4 일원	223.2	
			5	도통동 500-5 일원	185.5	
			6	도통동 500-6 일원	200.0	
			7	도통동 500-7 일원	172.8	
			8	도통동 500-14 일원	192.3	
			9	도통동 500-13 일원	193.5	
			10	도통동 500-12 일원	189.1	
			11	도통동 500-11 일원	200.1	
			12	도통동 500-10 일원	203.9	
			13	도통동 500-9 일원	231.9	
			14	도통동 500-8 일원	177.8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	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	
주거4	R24	2,205.7	1	도통동 499-1 일원	182.1		
			2	도통동 499-2 일원	181.7		
			3	도통동 499-3 일원	182.3		
			4	도통동 499-4 일원	185.3		
			5	도통동 499-5 일원	187.9		
			6	도통동 499-6 일원	205.6		
			7	도통동 499-12 일원	181.9		
			8	도통동 499-11 일원	182.0		
			9	도통동 499-10 일원	182.1		
			10	도통동 499-9 일원	182.7		
			11	도통동 499-8 일원	180.7		
			12	도통동 499-7 일원	171.4		
	R25	2,958.1	1	도통동 497-9 일원	248.3		
			2	도통동 497-10 일원	219.1		
			3	도통동 497-11 일원	223.8		
			4	도통동 497-1 일원	238.8		
			5	도통동 497-8 일원	258.7		
			6	도통동 497-6 일원	294.2		
			7	도통동 497-12 일원	293.3		
			8	도통동 497-2 일원	246.6		
			9	도통동 497-7 일원	248.8		
			10	도통동 497-5 일원	235.6		
			11	도통동 497-4 일원	231.8		
			12	도통동 497-3 일원	219.1		
	R26	2,199.7	1	도통동 498-8 일원	221.5		
			2	도통동 498-9 일원	205.2		
			3	도통동 498-10 일원	233.7		
			4	도통동 498-1 일원	187.0		
			5	도통동 498-2 일원	350.3		
			6	도통동 498-3 일원	196.8		
			7	도통동 498-7 일원	215.4		
			8	도통동 498-6 일원	195.5		
			9	도통동 498-5 일원	197.8		
			10	도통동 498-4 일원	196.5		
	합 계		14,857.4				

2) 상업용지

가) 도통1지구 상업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	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	
상업1	C1	2,275.7	1	도통동 536-5 일원	473.0		
			2	도통동 536-6 일원	473.3		
			3	도통동 536-1 일원	473.8		
			4	도통동 536-4 일원	283.8		
			5	도통동 536-3 일원	289.1		
			6	도통동 536-2 일원	282.7		
	C2	3,323.9	1	도통동 535-7 일원	492.7		
			2	도통동 535-8 일원	469.7		
			3	도통동 535-9 일원	512.9		
			4	도통동 535-1 일원	512.8		
			5	도통동 535-6 일원	263.0		
			6	도통동 535-5 일원	269.5		
			7	도통동 535-4 일원	269.6		
			8	도통동 535-3 일원	269.9		
			9	도통동 535-2 일원	263.8		
	상업2	C3	1,422.7	1	도통동 510-1 일원	343.7	
				2	도통동 510-6 일원	242.5	
				3	도통동 510-5 일원	261.1	
4				도통동 510-2 일원	258.3		
5				도통동 510-3 일원	317.1		
C4		5,337.9	1	도통동 509-12 일원	1,141.8		
			2	도통동 509-1 일원	1,131.2		
			3	도통동 509-11 일원	339.8		
			4	도통동 509-10 일원	300.8		
			5	도통동 509-9 일원	297.9		
			6	도통동 509-8 일원	299.8		
			7	도통동 509-7 일원	278.4		
			8	도통동 509-2 일원	280.9		
			9	도통동 509-3 일원	288.4		
			10	도통동 509-4 일원	300.6		
			11	도통동 509-5 일원	330.0		
			12	도통동 509-6 일원	348.3		
			합 계		12,360.2		

나) 도통2지구 상업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	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	
상업3	C5	4,981.9	1	도통동 496-7 일원	540.1		
			2	도통동 496-8 일원	475.1		
			3	도통동 496-9 일원	475.1		
			4	도통동 496-10 일원	475.3		
			5	도통동 496-1 일원	491.4		
			6	도통동 496-6 일원	479.0		
			7	도통동 496-5 일원	500.2		
			8	도통동 496-4 일원	500.0		
			9	도통동 496-3 일원	499.8		
			10	도통동 496-2 일원	545.9		
	C6	3,542.9	1	도통동 493 일원	3,542.9		
	C7	2,247.1	1	도통동 494-5 일원	368.7		
			2	도통동 494-6 일원	375.7		
			3	도통동 494-1 일원	368.7		
			4	도통동 494-4 일원	372.4		
			5	도통동 494-3 일원	382.8		
			6	도통동 494-2 일원	378.8		
	C8	4,351.0	1	도통동 495-1일원	549.0		
			2	도통동 495-1일원	621.6		
			3	도통동 495-1일원	664.5		
			4	도통동 495-1일원	522.7		
			5	도통동 495-1일원	955.5		
			6	도통동 495-1일원	522.7		
			7	도통동 495-1일원	515.0		
	C9	1,758.2	1	도통동 산10-6일원	1,758.2		
	상업4	C10	34,786.0	1	향교동 산3-3일원	11,343.0	
				2	향교동 2-6일원	6,664.7	
				3	도통동 333일원	4,987.4	
				4	도통동 333-4일원	1,475.8	
				5	월락동 500일원	934.8	
6				월락동 500-6일원	1,074.2		
7				월락동 500-2일원	3,939.4		
8				월락동 501-2일원	1334.1		
9				월락동 501-3일원	1,201.7		
10				월락동 495-18일원	1,830.9		
합 계		51,667.1					

3) 공공청사(남원시청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㎡)	
청사1	G1	16,689.4	1	도통동 518 일원	16,689.4	
소 계		16,689.4				
합 계		16,689.4				

4) 자동차정류장 → 도통2지구 상업용지 (변경)

도면번호		가구번호	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㎡)	
정류장1	상업3	B1	B1	3,510.8	1	도통동 495-1 번지	3,510.8	토지의 합병 및 분할가능
소 계				3,510.8				
합 계				3,510.8				

※ 획지의 합병·분할은 남원 도통1,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- 남원 도통1,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II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-

제2장 상업용지

<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>

제1조 (획지의 분할 및 합병)

- ① 상업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“가구 및 획지계획”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, 분할 할 수 없다. 다만,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.
- ② 상업용지는 인접한 두 획지의 합병은 가능하며,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며, 차후 합병된 획지를 분할할 시엔 합병전 획지선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.

5) 주차장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㎡)	
주차장1	P1	559.3	1	도통동 495-7 일원	559.3	
소 계		559.3				
합 계		559.3			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주거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	
R1~R26	도통동 512-3 일원	용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독주택 ◦ 다가구주택 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(제1종근린생활시설)·제4호(제2종근린생활시설) 및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5(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중 60%이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그 외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이용한다. 	
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◦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(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) 	
		건폐율	◦ 60% 이하		
		용적률	◦ 250% 이하		
		높이	◦ 5층 이하		
		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지안의 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「대지안의 공지」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	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은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,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. ◦ 1층 바닥높이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층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개별 주택으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, 건축물 정면의 바닥높이는 보도 등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한다. ◦ 지붕 및 옥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용지 건축물에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며, 설치시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. (단, 이면가로에 입지한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설치한다.) -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,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권장한다. -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. - 부득이하게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. ◦ 담장, 대문, 계단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-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. -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. - 부식되는 소재,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, 시멘트벽돌,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. 		
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소색 : 색상 - YR/Y, 명도 : 8~10, 채도 : 2이하 ◦ 보조색 : 색상 - YR/Y, 명도 : 6~8, 채도 : 4이하 ◦ 강조색 : 색상 - YR, 명도 : 3~7, 채도 : 3이하 ◦ 지붕색 : 색상 - 5.0YR~5.0Y, 명도 : 6이하, 채도 : 4이하 				

2) 상업용지 (변경없음)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	
C1~C10	도통동 509-1 일원	용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및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9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에 의거한 허용용도 - 단,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남원시도시계획조례 43조 (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)에서 제한한 건축물 제외 	
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(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) 	
		건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0% 이하 		
	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00% 이하 		
	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층 이하(C1~C9), 5층 이하(C10) 		
		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지안의 공지 - 상업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「대지안의 공지」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	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외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·외부가 단절된 폐쇄적 경관을 지양하고, 주변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벽면 설치를 권장한다. - 셔터의 사용은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투시형 셔터로 처리할 수 있다. -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고, 동일 건물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 - 보행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		
	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10, 채도 : 3이하 보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9, 채도 : 4이하 강조색 : 색상 - R/YR/Y 명도 : 3~7, 채도 : 5이하 지붕색 : 색상 - 5.0YR~5.0Y, 명도 : 6이하, 채도 : 4이하 		

3) 공공청사 (변경없음)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	
G1	도통동 518 일원	용도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공공업무시설(남원시청) 	
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	
		건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% 이하 		
	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 		
	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 이하 		
		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지안의 공지 - 공공청사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「대지안의 공지」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	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-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. -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 담장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-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. -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. - 부식되는 소재,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, 시멘트벽돌,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. 		
	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조색 : 색상 - YR~Y, 명도 : 8~10, 채도 : 2이하 보조색 : 색상 - YR~Y, 명도 : 6~8.5, 채도 : 4이하 강조색 : 색상 - YR~Y, 명도 : 4~7, 채도 : 3.5이하 지붕색 : 색상 - YR~Y, 명도 : 6이하, 채도 : 4이하 		

4) 자동차정류장 → 상업용지 (변경)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	위치		구분		계획내용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	
B1	B1	도통동 459-1 일원	도통동 459-1 일원	용도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여객자동차터미널(고속버스) 	
					허용 용도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별표9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및 「남원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1조제8호 에 따른 별표9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에 따른 허용용도 - 단, 경관지구(구 미관지구)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제1항 및 「남원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6조(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)에서 제한한 건축물 제외 	
					불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(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) 	
	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에 따른 용도 	
				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0% 이하 	
	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0% 이하 	
			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00% 이하 		
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00% 이하 		
			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층 이하 		
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층 이하 		
				배치 및 건축선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지안의 공지 - 자동차정류장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「대지안의 공지」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	
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지안의 공지 - 상업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「대지안의 공지」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		

※ 불허용도 :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

누구든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 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. <개정 2017. 1. 17., 2017. 12. 19., 2019. 12. 3., 2020. 3. 24., 2021. 9. 24.>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
3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,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5.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
6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·진동을 배출하는 시설
7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(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
8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1조제1항·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,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·매몰지
9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·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(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·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·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)
10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
11. 「축산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
1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
13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7)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), 가목9) 및 나목7)에 따라 **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**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
14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,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(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, 규모,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)
15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·보관·처분하는 장소(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)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16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
17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
18. 「담배사업법」에 의한 지정소매인,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19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20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2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,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22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,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
23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24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25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26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27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(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
28. 삭제 <2021. 9. 24.>
29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	위치		구분	계획내용	비고	
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	
B1	B1	도통동 459-1 일원	도통동 459-1 일원	형태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. -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 ◦ 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-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. -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. - 부식되는 소재,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, 시멘트벽돌,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. 	
	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축물의 외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·외부가 단절된 폐쇄적 경관을 지양하고, 주변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벽면 설치를 권장한다. - 셔터의 사용은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투시형 셔터로 처리할 수 있다. -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고, 동일 건물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 - 보행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◦ 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	
				색채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10, 채도 : 3이하 ◦ 보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9, 채도 : 4이하 ◦ 강조색 : 색상 - R/YR/Y 명도 : 3~7, 채도 : 5이하 ◦ 지붕색 : 색상 - 5.0YR~5.0Y, 명도 : 6이하, 채도 : 4이하 	
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10, 채도 : 3이하 ◦ 보조색 : 색상 - R/YR/Y, 명도 : 6~9, 채도 : 4이하 ◦ 강조색 : 색상 - R/YR/Y 명도 : 3~7, 채도 : 5이하 ◦ 지붕색 : 색상 - 5.0YR~5.0Y, 명도 : 6이하, 채도 : 4이하 						

5 주차장 (변경없음)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	
P1	도통동 495-7 일원	용도	허용용도	◦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, 기타 공작물 및 부속용도는 제외)	
			불허용도	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폐율	-		
		용적률	-		
		높이	-		
		배치 및 건축선	-		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담장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. -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. -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. - 부식되는 소재,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, 시멘트벽돌, 슈퍼 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. 		
		색채	-		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■ 옥외광고물 설치기준

구 분		설 치 기 준
기본원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남원시의 고유이미지와 지구적 특성이 반영된 매력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규격, 수량, 종류 등에 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조성 ◦ 옥외광고물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주변요소와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치
일반적 기준	설치 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여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◦ 가로형 광고물의 경우,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설치 ◦ 교통·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획 ◦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(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) 설치
	설치 개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 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 ◦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 ◦ 세로형 광고물,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하며, 현수막 등은 지침의 사항을 준수
	형태 및 비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조로운 판류형 광고물은 금지하고, 입체형 간판만을 권장하여 다양한 모양의 광고물을 디자인하고 획일화 극복 ◦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형태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집중될 수 있도록 조성 ◦ 업종의 성격과 영업형태에 따라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는 거리를 연출 ◦ 간결한 형태로 상호와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성 ◦ 인접광고물의 높이나 폭 비례를 일치시키고 인접광고물과의 서체크기가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조성
	소재 및 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동일 건축물 내의 광고물은 이질적인 이미지의 색채사용 지양 ◦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사용하되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색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성 ◦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조성 ◦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·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자재 사용 금지
	서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체는 지침에서 제시된 서체 사용을 권장하며, 다른 서체 사용 시 상점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서체를 사용하되 가독성과 조화미를 고려하여 적용 ◦ 가로의 통일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서체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1/2 이내로 제한 ◦ 서체색은 건물외관 및 광고물 바탕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
	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, 동영상 형식의 표시 및 자극적인 조명방식은 지양 ◦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, 안정기 등 전기기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◦ 간판의 휘도(광원의 밝기)는 눈부심을 최소화 ◦ 시각적으로 편안한 조명을 형성할 수 있는 조명방식을 적극 권장

구 분	설 치 기 준
가로형 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물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간판으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◦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 ◦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, 가로크기는 해당업소 가로폭 이내로 하며, 세로크기는 창문간 세로폭의 80%이하 또는 1.2m 중 작은 것으로 선택하여 설치 ◦ 입체문자형의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하며, 1층을 기준으로 한 층 높아질 때마다 5cm 까지 커질 수 있으나 최대 70cm 이내로 제한
건물상단 가로형 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물주가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/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한 것이며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(업소당 2개 간판)에 포함 ◦ 서체는 입체형만 가능하며 서체의 크기는 건물 상단 가로 폭의 1/2 이내, 가로 및 세로폭 1m까지 가능
차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층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 ◦ 한 건물에 사용된 차양막의 규격은 통일
유형별 표시기준 돌출 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광고물 총수량에 포함되며 한 업소당 1개까지 설치 가능 ◦ 단층 건축물은 행거형으로 설치하며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한다. ◦ 2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듈화 된 박스 형태로 균일크기의 일정 규격으로 통일되도록 설치하며 지침의 사항을 준수 ◦ 지면으로부터 3m이상(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)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건물벽면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◦ 연립형의 경우 건물의 동일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하되,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일 경우, 건물 양측단에 표시 가능 ◦ 문자나 도형부분에 대한 부분조명을 권장
지주이용 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나, 가로형 간판 적용이 힘든 건축물이거나 시청로, 충정로, 춘향로에 면한 4층 이상의 건축물 중 건축선을 후퇴한 건축물에 한하여 주출입구 부분에 1개의 연립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◦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간판의 설치는 금지 ◦ 일정한 규격의 교체가 가능한 게시틀을 사용하며 구조체는 무채색이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융화될 수 있도록 조성 ◦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3m이내로 하되, 1면의 면적은 2㎡ 이내로 제한 ◦ 지주이용간판은 보도경계선으로 부터 50cm이상(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경계선으로 부터 100cm이상)의 거리를 확보 ◦ 지주이용간판은 주변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 ◦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우선하여 설치하며 표시부분의 배경색은 한 가지로 통일 ◦ 지면과 접합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◦ 문자나 도형부분에 대한 부분조명을 권장

남원시 고시 제2023-2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171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171호선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23년 01월 06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71	6	국지 도로	149	중로 1-10	신정동 299답	일반 도로	남원가축 시장북측	남원시고시 제1994-28호 ('94.12.27)	-
변경	소로	3	171	6	국지 도로	149	중로 1-10	신정동 299답	일반 도로	남원가축 시장북측	남원시고시 제1994-28호 ('94.12.27)	선형 변경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 내용	변경 사유
소로3-171	소로3-1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형변경 ▪ A= (기정)1,042.8㎡ (변경)1,059.0㎡ 증)16.2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 결정된 노선의 일부가 279-1대, 285대에 침범하여 대지경계 및 지적선에 맞추어 일부선형 변경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3-171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: “실음생략”